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20284 보험급여(유족급여장례비청구) 불승인 결정

원 고 1. [Redacted]

2. [Redacted]

원고들 주소 [Redacted]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소송복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가 2021. 11. 18.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유족급여 장례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9.경부터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 소유의 [] 등선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월명기¹⁾인 2021. 2. 25 []항에 입항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에 있는 형님 집에 가 있다가 다음날인 2021. 2. 26. 14:00경²⁾ 형님 집에서 불상의 질병(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협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라. 원고들은 2021. 3.경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1. 1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이 직무상 또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매월 음력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위 기간에는 달빛이 밝아서 어류 등이 바다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어획량이 급감하므로 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2) 갑3호증에 의한 추정시각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선박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으로 약칭한다) 27조 1항의 직 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2) 어선원재해보험법 상 '승무 중'에는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에 수반되 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데, 월명기는 다음 출항을 위한 정비작업을 하는 기간으로 위 기간에 포함된다. 망인은 월명기 중 사망한 것이므로 위 법상 승무 중 사망에 해당한 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갑3호증, 을6호증의 1, 2, 을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은 2021. 2. 25.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형님 집으로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후 그 다음날인 2021. 2. 26.에 형님 및 이웃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잠을 자다가 14:00경을 전후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 당시 망인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망인이 이 사건 선박 승선 중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사망할 즈음 급격한 업



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망인은 동료선원들에게 코로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불상의 질병(추정)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갑3호증).

○ 망인의 형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몇 년 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험이 있으며 평소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6호증의 2, 2면 하단).

○ 피고 측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3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3곳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21호증 참조). 특히 [redacted] 병원 [redacted] 과에서는 의식 저하로 응급실 방문했던 병력, 알코올성 간장질환 병력, 음주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선원재해보험법 27조 2항 및 28조 1항에 의하면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23조 1항에 의하면 '승무 중'에는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해서는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참조). 한편 하선 후의 휴무 기간, 즉 선원이 구체적인 선내항행조직에서 이탈하여 선내항행조직의 기능수행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승무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의 규정 및 법리 등에 의하면 '승무 중'의 기간에는 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②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③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형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고 당시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이란 선박이 선적항이 아닌 항구³⁾에 입항하여 선원들이 업무 또는 휴식을 위하여 하선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은 그 선적항이 [] 항이고 이 사건 당시 [] 항에 입항해 있었으므로 기항지에 상륙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망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형님 집에서 휴식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선박에서 하선하여 형님 집으로 이동하거나 승선을 위하여 선박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므로,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원고 측은, 단체협약 상 월명기 동안 선원들은 다음 출항을 위하여 정비작업을 하여야 하고 무단하선해서는 안 되는 등의 사정을 들어 망인이 승무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근무했던 []

3) 원고 측은 기항지에 선적항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곳이라는 기항지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하면 월명기 동안 선원은 다음 출어를 위해 관례에 따르는 정비작업을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하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일응 보인다[단체협약서 19조 6항, 7항(갑4호증 8면)]. 그러나 ○ 이 사건 선박은 해상에서 조업 시 불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선으로 어구나 어획물을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 입항 후 어획물을 내리거나 월명기 동안 어구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 역시 이 사건 선박이 입항하여 계류 후 바로 하선한 것으로 보이고(2022. 4. 29. 도착한 [redacted]의 사실조회 회신 2항), 하선 전에 따로 하선허가 등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의 월명기 동안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관리나 정비를 위하여 월명기 도중에 선박에 다시 승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월명기 동안에도 망인이 선박 관리 등을 위하여 월명기 도중에 다시 승선할 예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었던 증인 [redacted]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 증언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 월명기 동안 이 사건 선박은 [redacted] [redacted]에 정박하고 있었고 선박관리는 사무실 직원인 [redacted] 이사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실조회 회신 3항), ○ 위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과는 달리 망인은 실제로는 월명기 동안 귀가하여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하선 후 휴식기간은 망인이 구체적인 선내항행조직에서 이탈하여 선내항행조직의 기능수행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월명기로 인한 하선 상태에 있었던 점을 들어 망인이 승무 중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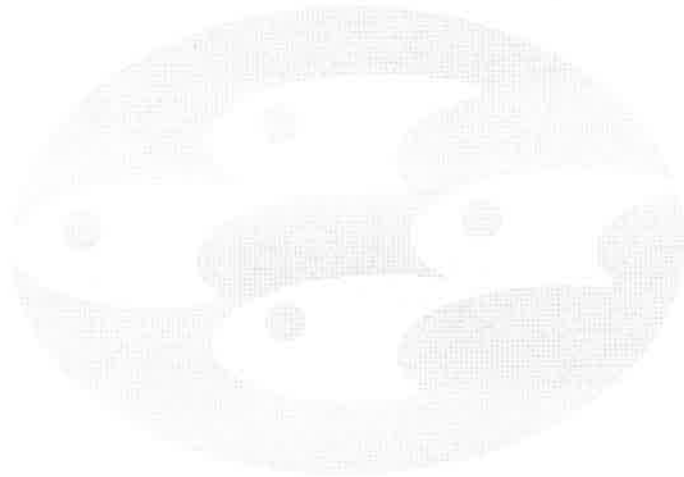
3. 결론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